

대법원 2023. 2. 2 선고 2022다26871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2. 2 선고 2022다268719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나2033891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8. 24 선고 2019가합115656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, 하우정, 정석종

피고, 피상고인 한국공항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

담당변호사 김병희, 이한길, 임호산, 최병문

판 결 선 고 2023. 2. 2.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1나2033891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)를 판단한다.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잡종지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부지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행사업 진행 중 농지전용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, 이 사건 실시협약 및 원고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,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,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, 고지의무 및 부당이득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정희, 주 심 대법관 안철상, 대법관 오석준